

무선국 관리 규정

제 1 장 목 적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(이하 “연맹”이라 한다)에서 국내 아마추어국의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
제 2 장 자 격 증

제 2 조 (신 형) 국가기술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 자격증을 발급 받는다.

제 3 조 (수수료) 기술자격 검정시험의 신청수수료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다.

제 3 장 무선국 허가

제 4 조 (허가신청) 무선국 허가신청은 전파법 시행령(이하 ‘령’이라 한다) 제31조에 의한다.

제 5 조 (변경과 신고) 영 제51조에 의한다.

제 6 조 (재 허가) 무선국의 허가기간 만료 시 영 제38조에 의거 재허가 신청한다.

제 4 장 자율지도운영

제 7 조 (목적) 본장은 국내 아마추어무선의 건전한 운용 질서와 품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적 지도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한다.

제 8 조 (적 용) 국내 아마추어무선의 자율 및 운용 지도에 관하여 연맹 정관 및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 규정을 적용한다.

제 9 조 (임무 및 대상) ① 자율지도위원의 임무는 허가증에 기재된 주파수대 내에서 전파법령에 규정된 운용 준수 사항을 주의 촉구, 지도, 계몽으로 한다.

② 자율지도 대상은 전파법에 의거 허가된 모든 아마추어국으로 한다.

제 10 조 (조 직) ① 자율지도위원은 50명 이내로 두며,

중앙전파관리소의 요청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.

② 자율지도위원은 지역본부에서 추천을 받으며,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위촉한다.

제 11 조 (임 기) 자율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자율지도위원의 자격) ① 정회원(단체무선국 포함)으로서 아마추어무선기사 3급 이상, 3년 이상의 아마추어국 운용 경험이 있어야 한다. 단, 단체무선국은 예외로 한다.

② 단파대 및 초단파대 또는 그 이상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.

③ 사상이 건전하고 아마추어무선의 운용에 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

제 13 조 (자율지도 내용) 자율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.

1. 아마추어국 운용 준수 사항
2. 아마추어 통신을 저해하는 교신내용 및 품위손상 행위
3. 아마추어국 운용상 발생하는 분쟁
4. 아마추어국에서 발생하는 전파법령 운용위반 사항

제 14 조 (결과 처리) ① 자율지도위원은 활동 실적을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관할 분소 및 연맹에 제출한다.

② 자율지도위원은 지도가 이행되지 않는 전파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반자료(녹음테이프 등 증빙자료)를 첨부하여 관할 분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조치는 관할 분소에서 전파감시업무지침에 의거 처리한다.

제 15 조 (기록 및 공고) 전조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연맹 사무총국의 자율지도원부(별지)에 기록 보관하며, 필요에 따라 연맹 기관지에 공고할 수 있다.

제 16 조 (운영경비) 운영상 필요한 경비는 연맹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.

제 5 장 이동 무선국 운용

제 17 조 (목 적) 본장은 이동무선국(HLØA, N, V)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18 조 (운 용) 이동무선국의 운용은 연맹 정회원에 한한다.

제 19 조 (권한의 위임) 대표자가 운용 장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대표권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운용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다.

제 20 조 (운용신청서) ① 이동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용 15일전까지 이동운용신청서를 소속 지역본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운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무총국에서 이를 조정하여 해당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(신청접수) ① 이동무선국 운용 신청은 운용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접수한다.

② 운용신청서는 사무총국 및 지역본부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 양식 2부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2 조 (통 보) 접수된 신청서는 담당 이사의 결재를 얻어 그 가부를 운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23 조 (비 용) 이동 무선국 운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, 연맹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 24 조 (결과보고) 이동무선국의 대표자는 이동 무선국 운용 후 15일 이내 업무일지를 포함한 운용 보고서를 소속 지역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5 조 (교신카드) 이동무선국 운용 후 업무일지에 기재된 교신 상대국에 대한 QSL 카드를 발행하여야 한다.

제 6 장

재난통신지원단 및 비상통신

삭 제

제 7 장 중계기(REPEATER)설치 및 운용

제 34 조 (목 적) 본장은 아마추어무선 중계기(이하 중계기라 함)의 허가, 설치 및 운용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하여 중계기가 효율적으로 운용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35 조 (적 용) 제반 법규 적용은 전파법에 따르며, 그 외의 사항은 본 장에 의거 처리한다.

제 36 조 (기 구) 연맹 이사장은 중계기위원회를 둔다.

제 37 조 (중계기의 허가 및 폐국(폐지)) ① 중계기의 허가, 설치 및 폐국 등 필요한 절차는 각 지역 지역본부장이 연맹 이사장에게 허가 신청한다.

② 중계기는 연맹 이사장 명의로 허가신청하며 운용책임자는 각 지역의 지역 본부장이며 관리자를 둘 수 있다.

③ 중계기는 각 지역본부 관할구역에 설치한다.

④ 중계기의 신청은 각 지역본부장이 연맹에 제출하여, 중계기위원회 위원이 현지를 답사하여 설치요건 심의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.

⑤ 중계기의 주파수는 중계기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연맹에서 배정한다.

⑥ 중계기 신청서식은 별첨 서식에 따른다.

제 38 조 (중계기 설치 조건 및 운용) ① 중계기의 설치 는 전파법에 합당하여야 한다.

② 중계기는 아마추어무선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한다.

③ 재해 재난 및 인명구조등 긴급교신과 훈련에 우선하며, 재해,재난시는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다

④ 설치 된 중계기의 유지보수 관리책임자는 각 지역본부장이며 지부 및 단체가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.

⑤ 허가, 설치 및 보수 등 중계기에 관계되는 모든 경비는 설치허가를 받은 지역본부 지부, 단체에서 책임져야 한다.

⑥ 설치허가를 받아 중계기를 운영하는 지역본부 지부, 단체는 중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 사상의 책임을 진다.

⑦ 이 규정 제39조 중계기의 기술 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.

⑧ 중계기의 설치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이 규정 제37조 제⑥항의 서식.

2. 설치 허가 요청서(지역본부장이 이사장에게 제출)
3. 설치 및 관리 계획서와 경비, 내역 설치지역본부장 지부장, 단체장의 서약서

⑨ 제8항의 제출 서류는 연맹에 복사 보관한다.

제 39 조 (기술 조건) 중계기의 기술적인 조건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사용 주파수
28MHz, 50MHz, 144MHz, 430MHz, 1.2GHz, 2.4GHz, 3.4GHz, 5.6GHz, 10.0GHz, 24.0 GHz
2. 전파 형식
F2, F3, DATA
3. 공중선 전력
28MHz, 50MHz : 50W 이하
144MHz, 430MHz : 25W이하
1200MHz : 10W이하
4. 수신과 송신 주파수간의 간격
28MHz, 50MHz, 144MHz : 국제기준(144-0.6MHz)
430MHz, 1.2GHz : 국제기준(430MHz-5.0, 1.2GHz-20.0MHz)
5. 수신 신호가 정지할 때 송신은 5초 이내에 정지하여야 한다.
6. 동일 주파수대역에서 2개 이상파가 동시에 송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.
7. 모든 국내 중계기는 송수신 톤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.
8. 모든 중계기의 톤은 88.5Hz로 한다.
9. 유,무선중계기는 자국의 호출부호를 매 시간마다 송신하여야 한다.
10. 중계기의 송신 시간은 연속 5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송신할 경우 자동으로 송신이 중단될 수 있어야 한다.
11. 상기 사항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침에 의거 변경할 수 있다.
12. 중계기에는 반드시 낙뢰방지 장치와 기기 접지를 하여야된다. (접지저항 10Ω 이하)
13. 중계기는 KARL BAND PLANE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설정하여야한다.(단과거허가된 중계기는 이규정을 준용하여 변경한다)

제 40 조 (관 리) ① 중계기의 설치, 보수 및 전원의 개폐 등 운용 사항은 관할 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이 관리하고 책임진다.

② 중계기 운용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는 설치허가를 받은 지역본부, 지부 및 단체에서 부담한다.(인허가비용 연맹부

담)

제 41 조 (변 경) ① 혼신, 기기 변경, 기타의 여건으로 인하여 정상적 운용이 곤란할 때에는 관할 지역본부장이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중계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주파수, 출력, 설치장소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계기위원회를 소집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③ 변경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변경하는 중계기의 관할 지역본부,지부,단체에서 부담한다 (단연맹에서 필요 변경 시 비용은 연맹에서 부담한다).

제 42 조 (고 시) 중계기의 허가, 변경, 폐국에 관한 사항은 연맹지에 호출부호, 주파수, 출력, 운용 장소, 운용 책임자 및 기타 사항을 공고한다.

제 43 조 (보 고) ① 각 해당지역 본부장은 매 6개월마다(매년 4월말과 11월말)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한다.

1. 중계기의 운용정지 시 기간과 원인
2. 중계기의 기계고장 시 원인과 조치사항
3. 기타 목적 외 교신 등 지시 및 규정 위반사항

② 중계기 설치허가를 받아 중계기를 운용하는 책임자는 매월 1회 한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, 지시 및 위규 사항 또는 중계기의 문제가 발생시 지역본부장은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 한다. 보고사항은 ①항의 각호를 준용한다.

제 44 조 (폐 국) ① 중계기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될 때 관리자에게 개선토록 조치하고, 이에 불복하는 경우 그 중계기를 폐국 처리할 수 있다.

② 폐국 시에도 관리자는 모든 처리 비용 및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제 45 조 (규정 예외 사항) ① 중계기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규정 제2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

② 중계기위원회에서 결정 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이사회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 (제1장 개정) ① 2004. 5. 22. 제1조 개정

제 2 조 (제2장 및 제3장 개정) ① 1995. 1. 14. 추천서를 확인서로 변경

② 1996. 10. 8. 제3장 삭제되고, 제4장이 제3장으로 개정

③ 2000. 9. 16. 제3장 제12조 ①항 개정.

- ④ 2001. 11. 10. 제2조, 제3조, 제4조 개정
- ⑤ 2001. 11. 10. 제5조, 제6조 개정
- ⑥ 2004. 5. 22. 제2장 무선국허가를 제3장으로 변경. 제3장 면허를 제2장 자격증으로 변경. 제2조를 제4조, 제3조를 제5조, 제4조를 제6조, 제5조를 제2조, 제6조를 제3조로 변경 및 자구수정

제 3 조 (제4장 개정) ① 1998. 10. 17.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3조, 제14조, 제17조 개정 및 제12조, 제15조, 제16조 삭제

② 2004. 5. 22. 제11조 및 제13조 개정

제 4 조 (제5장 경과조치 및 개정) ① 이 장은 1987. 8. 15. 부터 개정 시행하며, 그 이전에 등록된 것은 이 장에 의거 승인 등록된 것으로 한다. (1986. 12. 1. 제정 시행) (1987. 8. 14. 개정)

② 1995. 1. 14. 제13조 개정

③ 1996. 10. 8. 제5장 삭제되고, 제7장이 제5장으로 개정 및 제23조 제1항, 제27조 개정

제 5 조 (제6장 시행일, 경과조치 및 개정) ① 이 장은 1983. 11. 25.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 조치) 이 장 이전의 자율지도 운영규정은 이 장으로 대치한다.

③ 1984. 3. 29. 개정 제40조, 제42조 제⑤항

④ 1984. 9. 1. 개정 제43조 제⑥항

⑤ 1986. 11. 개정 감시 단어 삭제

⑥ 1991. 2. 26. 개정 제35조 제②항, 제40조 제①항, 제42조 제⑤항

⑦ 1995. 1. 14. 개정 제33조 제③항

⑧ 1996. 10. 8. 제8장이 제6장으로 개정 및 제30조 개정

⑨ 2002. 3. 9. 제31조 개정

⑩ 2004. 5. 22. 제28조 개정

⑪ 2007. 4. 7. 제6장 삭제

제 6 조 (제7장 시행일 및 개정) ① 이 규정은 1981. 1. 1.부터 시행한다.

② 1995. 1. 14. 개정 제37조, 제45조 가항 삭제

③ 1996. 10. 8. 제9장이 제7장으로 개정

④ 2002. 3. 9. 제39조 제④항, 제⑩항 개정.

⑤ 2004. 5. 22. 제36조, 제38조, 제39조 개정

⑥ 2005. 12. 3 제37조 ②항 ③항 개정 및 ④항 신설, 제38조 ④항 ⑤항 ⑥항 ⑧항 개정 및 신설, 제39조, 제40조, 제43조 개정.

- ⑦ 2007. 10. 13. 제36조 제①항, 제37조 제④항 개정.
- ⑧ 2013. 12. 14. 제36조, 제37조 제④, ⑤항, 제41조 제②항, 제45조 제①, ②항 위원회 명칭 변경
- ⑨ 2015. 2. 14. 제39조 ⑩항 명칭 변경
- ⑩ 2017. 5. 13. 통신기술위원회를 중계기위원회로 변경

제 7 조 (제8장 개정) ① 이 장은 1987. 8. 15.부터 시행한다.

② 1995. 8. 29. 재난통신지원단 및 비상통신으로 재구성

③ 1996. 10. 8. 제10장이 제8장으로 개정

제 8 조 (제9장 시행일 및 개정) ① 이 장의 시행은 1992. 1. 1.부터로 한다.

② 1995. 1. 14. 개정 리피터국을 중계기로

③ 제9장이 제7장으로 개정되면서 삭제

제 9 조 (개 정) ① 제3편은 무선국관리규정으로 재구성된 것이며, 그 내역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.

1. 사무국운영내규 제3항 제11-17조를 제2편 제2장 무선국 허가로 통합
2. 사무국운영내규 제6장 제22-26조를 제2편 제3장 추천서로 통합
3. 사무국운영내규 제7장 제27-28조를 제2편 제4장 면허로 통합
4. 클럽 규정 제1-21조를 제2편 제5장 클럽으로 통합
5. 자율지도운영규정 제1-13조를 제2편 제6장 자율지도운영으로 통합
6. 이동무선국운용세칙 제1-12조를 제2편 제7장 이동무선국 운용으로 통합
7. 비상 통신 규정 제1-13조를 제2편 제8장 비상 통신으로 통합
8. 중계기 설치 및 운용 규정을 제2편 제9장 중계기로 통합
9. 1992. 10. 27. 이사회에서 확정

② 1995. 1. 14. 사무국을 사무총국으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정

③ 1996. 10. 8. 기존의 제10장 제72조의 규정을 제8장 제54조의 규정으로 재구성되며 무선국관리규정 제3장 및 제5장이 삭제되어, 기존의 무선국관리규정 제4장, 제6장, 제7장, 제8장, 제9장, 제10장이 제3장, 제4장, 제5장, 제6장, 제7장, 제8장으로 개정

④ 2004. 5. 22. 제목의 편수 삭제 및 부칙조문 개정

⑤ 2007. 4. 7. 제6장 삭제

⑥ 2011.10.8. 본 규정은 개정 즉시 그 효력을 발생 한다.